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학생회칙

제1장	총칙	2
제2장	회원	2
제3장	소비자학과 학생총회	3
제4장	소비자학과 학생총투표	6
제5장	소비자학과 학생회	7
	제1절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	7
	제2절 소비자학과 집행위원회	11
제6장	소비자학과 비상대책위원회	13
제7장	소비자학과 학년대표	15
제8장	소비자학과 학생자치단체	15
제9장	재정	17
제10장	선거	18
제11장	회칙	22
	부칙	2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자치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학문탐구의 장과 올바른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소비자학과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교 소비자학과 원전공생 중 재학생으로 한다.
- ③ 휴학생, 복수전공생, 수료생은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는다. 준회원은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④ 졸업·자퇴·퇴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소비자학과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 ④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자치활동에 침해를 받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인종·성별·종교·사상·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⑥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소비자학과 학생총회

제6조(지위)

소비자학과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7조(구성)

- ①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필요에 따라 1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의장의 허가에 한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8조(의장)

- ① 의장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기초해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소비자학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 ③ 누구든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결 전까지 의장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 ④ 총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맡을 이가 없으면, 소비자학과 집행위원 중 호선된 자 1인이 의장이 된다.

제9조(소집)

- ① 총회의 소집은 본회 정회원의 1/10이상 또는 소비자학과 집행위원회 1/3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은 7일 전에 총회의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2주 이내에 재소집한다.

제10조(의결 및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개최되어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

1.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의 탄핵안 의결
2. 본회의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결
3. 기타 소비자학과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11조(개회)

총회는 본회 정회원 1/6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제12조(의결)

- ① 총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가 불가능할 시 총투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총투표 결과는 총회에서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조 (결과의 공고)

총회가 종료되어 의결이 완료되면 의결 완료 시부터 1주 이내에 의장이 총회의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그 밖에 총회의 모든 절차에 관하여는 상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소비자학과 학생총투표

제15조(지위)

소비자학과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총회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6조(투표권)

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있다.

제17조(시행)

총투표는 총회의 발의 혹은 소비자학과 집행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소비자학과 학생회장이 시행한다.

제18조(시행공고)

총투표는 실시 7일 전에 다음 각 호와 함께 그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건 및 사유
2. 총투표 시행일
3. 총투표 유권자

제19조(성립 • 의결 요건)

- ① 정회원 1/3 이상의 투표로 성립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투표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동일 안건을 해당 학기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5장 소비자학과 학생회

제1절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

제20조(구성)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은 소비자학과 학생회장 1인 혹은 소비자학과 학생회장 1인과 소비자학과 부학생회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제21조(지위)

- ①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의 장이 된다.
- ②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은 학교와 학생자치 및 학생회 제반 사항의 논의 및 결정을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사회과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자의 지위를 가진다.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 또한 갖는다.

제22조(의무)

학생회장단은 업무 개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회원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학생자치의 원칙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2. 학생회장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 전체의 요구를 대변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4.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단체 혹은 의결기관 등을 소집할 수 있다.
3. 학생회장단은 당연직으로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는다.
4. 학생회장단은 소비자학과 집행위원의 해임안을 결정할 수 있다.
5. 학생회장단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집행위원회의 정책과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6. 학생회장단은 차기 학생회 건설을 위해 힘쓴다.
7. 이외에 본회를 위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한 사업과 정책 전반을 수립 및 추진한다.

제24조(임기)

- ①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차기 당선자 공표일까지로 한다.
- ② 차기 선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잔여일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11월 30일을 임기 종료일로 상정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소비자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차기 당선자 공표일까지로 한다.

제25조(권한대행)

- ① 소비자학과 부학생회장은 소비자학과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의 임기 잔여일이 120일 미만인 상태에서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소비자학과 집행위원회의 집행국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의 임기 잔여일이 120일 이상인 상태에서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에는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준한다.
- ⑤ 권한대행의 임기는 차기 혹은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까지로 한다. 탄핵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26조(사퇴)

- ①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이 사퇴할 경우, 사퇴의 사실과 이유를 밝힌 사퇴문을 작성하여 본회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 ② 사퇴문은 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직위와 권한이 해제된다.

제27조(탄핵)

①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탄핵절차에 의거하여 탄핵될 수 있다.

1. 본회의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3. 학생회장단으로서의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중단한 경우

4. 학생회장단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기한 경우

5. 경범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6. 학생회비를 유용한 경우

7. 기타 학생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탄핵은 정회원 1/3 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단, 탄핵의 대상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③ 탄핵이 발의되면 총회는 1주일 이내에 탄핵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일 내에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4장을 기반으로 한 학생총투표를 실시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④ 탄핵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을 준용한다.

⑤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탄핵안 또는 탄핵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2절 소비자학과 집행위원회

제28조(지위)

소비자학과 집행위원회(또는 학생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29조(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정, 부 학생회장, 각 국서의 장, 이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집행위원의 임명권은 학생회장단이 가진다.
- ③ 집행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집행위원의 해임안을 학생회장단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해임된 집행위원은 다음 해의 학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재임명될 수 없다.
- ④ 해임에 관한 사유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집행위원회 내부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산하 국서는 학생회장단이 결정한다.

제30조(집행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집행위원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학생자치의 원칙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 ② 모든 집행위원은 본회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사업과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 ③ 모든 집행위원은 본회 회원 전체의 요구를 대변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 ④ 모든 집행위원은 본회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총회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제1항 외에도 본회에 바람직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계획 및 집행한다.

제32조(국서 명칭 및 업무)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제반활동 집행을 위해 국서를 구분한다. 단, 국서의 편성 형태는 당해연도 학생회장단이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임기)

모든 집행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당기의 학생회장단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장 소비자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제34조(지위)

소비자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동안 소비자학과 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이다.

제35조(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72시간 이내에 구성된다. 제1호의 경우, 전임 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시, 전임 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된다.

1.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2.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의 임기 잔여일이 120일 이상인 상태에서 모두 궐위된 경우

3.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의 임기 잔여일이 120일 이상인 상태에서 모두 탄핵된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3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비상대책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임 학생회장단 중 1인이 맡는다.
- ② 본조 제1항이 불가할 경우, 전임 학생회 집행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1인으로 호선한다. 단, 탄핵의 경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7조(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소비자학과 학생회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소비자학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학과 학생회장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가진다.
- ④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해산 후 구성되는 차기 학생회에 업무 및 진행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9조(기타)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비자학과 학생회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

제7장 소비자학과 학년대표

제40조(구성)

소비자학과 각 학년대표는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대표로 구성한다.

제41조(지위)

소비자학과 학년대표는 학교와 학생자치 및 학생회 제반 사항의 논의, 결정 및 의사 결정과정의 참여를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사회과학대학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표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42조(임기)

학년대표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차기 학년대표 선출 확정 시점까지로 한다.

제8장 소비자학과 학생자치단체

제43조(등록 요건)

소비자학과 자치단체(이하 "학회")로 인정받고 활동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특정 소양에 대해 습득·탐구·창작·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들끼리 모여 정보 공유·친목을 도모하는 단체
3.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4. 기타 목적과 체계가 분명한 단체

제44조(분류 및 구성)

- ①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비자학과 원전공생이어야 한다.
- ② 소비자학과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7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자치단체의 대표자는 소비자학과 원전공생으로 한다.

제45조(등록 절차)

소비자학과와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① 등록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소개서, 7인 이상이 서명한 전체 구성원 명부, 활동계획서, 서약서를 소비자학과 학생회에 서면 혹은 PDF 파일로 제출한다.
- ② 소비자학과 학생회에서 제1항의 서류를 확인한 후 신규자치단체 인준 심의를 진행한다.
- ③ 해당 단위의 인준 여부는 학생회 정기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 전체 참석 인원의 $\frac{2}{3}$ 찬성으로 결정된다.
- ④ 소비자학과 학생회는 인준 결과를 의결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 ⑤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제출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60일간 정기 집행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

제46조(등록 기간)

- ① 소비자학과 자치단체의 등록 기간은 상시로 한다.
- ② 소비자학과 학생회는 자치단체 인준 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의 정기 집행부 회의에 해당 안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속히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장 재정

제4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과지원금, 사회과학대학 지원금, 사업별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48조(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과 2학기과 나누어 집행한다.

제49조(집행 및 관리)

-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 ② 본회의 수입과 지출은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50조(결산)

- ① 결산은 매 학기 말 학생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확정된 결산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공고 후 10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와 함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결산 내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집행위원회는 3일 이내에 결산안을 검토 및 수정하여 공고한다.

제51조(감사위원회)

본회의 재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문제가 밝혀질 경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을 준용하여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감사위원회에서 제재를 결정한다.

제10장 선거

제52조(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53조(시기)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0, 11월 중에 실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소비자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4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

제55조(입후보자)

- ① 정, 부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 ② 등록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56조(소비자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소비자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본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이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비자학과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소비자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 중 1인으로 임명한다. 학생회장단 궐위 시, 혹은 선관위장 사퇴 시 집행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한다.
- ③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④ 선관위는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차기 학생회 건설에 의무를 가진다.
- ⑤ 선관위는 투표일 3주 전에 구성하여 공고한다.

제57조(선거운동)

- ① 본회의 회원은 소비자학과 집행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은 오프라인, 온라인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다.

제58조(투표)

선관위의 관리 하에, 3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단, 선관위의 의결 하에 최대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당선)

- ① 유효한 선거는 정회원의 과반수가 투표한 선거이다.
- ② 유효한 선거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한 선거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③ 후보자 당선 시 선관위는 전체 투표율 및 득표율과 오차율을 공지한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0조(당선무효)

① 최다 득표한 선거본부와 이외의 선거본부 간의 표차가 유효투표의 오차 표수 이하일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오차율이 유효투표의 3%를 넘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61조(재투표)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1. 제61조 제1항의 경우
2. 제61조 제2항의 경우
3. 선거연장기간 종료 이후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제62조(선거무효)

① 재투표의 경우에도 전체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한다.

② 선거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관위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선거를 무효 처리할 수 있다.

제63조(재선거)

선거가 무효처리 될 경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64조(보궐선거)

- ①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 궐위 시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 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는 집행국장 중 1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학생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는 탄핵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보궐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행국장 중 1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65조(회칙 및 선거세칙)

기타 선거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11장 회칙

제66조(개정 발의)

① 학생회칙의 개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발의된다.

1.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 소비자학과 집행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3. 학생회장단의 발의

② 학생회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학생회칙의 개정은 발의 당시 학생회장에게는 효력이 없다.

제67조(의결)

본회의 회칙개정은 사전공지를 거쳐 학생총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68조(공포 및 효력 발생)

① 회칙이 개정되었을 시 소비자학과 학생회장은 이를 72시간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칙의 개정이 확정되고도 72시간 넘게 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위원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4년 10월 10일 00시에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소비자학과 학생회에 있다.

제3조(관례의 준용)

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식과 관례에 따른다.